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78

발의연월일: 2025. 4. 21.

발 의 자 : 민형배 · 김문수 · 이성윤

김동아 • 박지원 • 이개호

김현정 • 문정복 • 장철민

위성락 · 손명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도 연간 상한액 한도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 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개인 기부 는 연간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특히 법인 기부를 금지하였 습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고향발전을 위해 기부에 동참하고자 하는 법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고, 무엇보다 법인은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인을 기부 주체에서 배제하고 금액 제한을 두는 한 고향사랑기부제 활

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주체에 법인을 포함하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 러, 법인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 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 다(안 제2조 등).

법률 제 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타인"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람"을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별"을 "기부자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주민"을 "주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법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	1
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	
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u>사람</u> 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	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
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	2
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	
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	
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u>사람</u> 에게 의뢰	사람 또는 법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u>୍</u> ପି
말한다.	<u>.</u>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	주체 및 대상) ①
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	
민이 아닌 <u>사람</u> 에 대해서만 고	<u>사람 또는 해당 지</u>
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u>타인</u>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생략)

-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생 략)
 -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 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u>사람</u> (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 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u>개인별</u>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 다. <u><단서 신설></u>

<u>법인</u>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다른 사람 또는 법인
<u>.</u>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
ス]) ①
<u>사람 또는 법인</u>
<u> 71日 ユレ 日记</u>
 ⓒ (취레기 기호)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람
또는 법인
③ <u>기부자별</u>
<u>다만, 법인에 대하여는 적</u>
용하지 아니한다.
U

④ (생 략)

-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 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 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 7. (생 략)
 - ②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1
주민 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소재한 법인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